

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의안 번호	20273
----------	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6. 7.

제안자 :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의안명	대표발의자	발의일자	심사경과
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제2207334호)	박형수의원	2025.1.8.	제422회국회(임시회) 제2차 전체 회의(2025.02.19.) 상정 후 제안설 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회부
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제2218410호)	임미애의원	2026.4.17.	「국회법」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(2026.04.23.)

가. 제434회국회(임시회) 제2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(2026.4.29.)

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각
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.

나. 제435회국회(임시회)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(2026.5.12.)에

서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
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해양수산법안심사
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수산자원관리법」 제14조제1항에 따라 포획·채취가 금지되는 체장·체중 기준에 해당하는 수입수산물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과 「수산자원관리법」 제14조제2항에 따라 포획·채취가 금지되는 특정 어종의 암컷에 해당하는 수입수산물의 유통을 금지하려는 것임(안 제37조).

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제1항제2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「수산자원관리법」 제14조제1항에 따라 포획·채취가 금지되는
체장 또는 체중 기준에 해당되는 수입수산물 중 해양수산부장관이
정하여 고시하는 품목

3. 「수산자원관리법」 제14조제2항에 따라 포획·채취가 금지되는
특정 어종의 암컷에 해당하는 수입수산물

제37조제3항 중 “제2항 각 호”를 “제1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
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의 기준과 그 절차 및 제2항 각 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7조(불법 수산물의 유통 금지 등)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산물은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	제37조(불법 수산물의 유통 금지 등) ①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<신설>	2. 「수산자원관리법」 제14조 제1항에 따라 포획·채취가 금지되는 체장 또는 체중 기준에 해당되는 수입수산물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
<신설>	3. 「수산자원관리법」 제14조 제2항에 따라 포획·채취가 금지되는 특정 어종의 암컷에 해당하는 수입수산물
2. (생략)	4. (현행 제2호와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③ 제1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의 기준과 그 절차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